

< 2023학년도 제4차 규정 개정(안) 현황 >

소관부서	공고 NO	규정명	제정	개정	폐지	비고
기획처	43	위원회설치 및 운영규정		○		1p
교학처(교학1팀)	44	교직원복지지원규정		○		5p
			-	2	-	

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(안)

1. 제안이유

가. 각종 위원회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 대리인 지정을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 대리인을 지정

- 관련조항 : 제4조(구성)

3. 주요토의과제

가. 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규정 :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없음

라. 기타 : 없음

※ 담당자(이메일주소) : 기획처 강민구(marrygkwk@kookje.ac.kr)

붙임 1.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(안) 신·구조문대비표 1부.

2.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(안) 전문 1부. 끝.

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(안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 시 보직자는 전체 재직위원의 과반수를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</p> <p>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한다.</p> <p>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, 간사는 교직원 중에서 위촉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 설></u></p>	<p>제4조(구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color: red;">⑤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기한을 정해 위원장을 대행한다.</p>

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

제정 2003. 3. 1 전부개정 2020.06.02.

개정 2024.00.00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국제대학교(이하 '본 대학교'라 한다)의 학사 및 대학 행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사립대학에 적용되는 법령, 정관, 학칙 및 기타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설치 및 통·폐합) ①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부서의 장이 위원회의 설치 목적, 기능, 구성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위원회 설치·운영 계획 및 규정안을 마련하여 기획처에 제출한다.

② 위원회를 통·폐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부서의 장이 통·폐합 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기획처에 제출한다.

③ 기획처는 위원회 설치 및 통·폐합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한다.

④ 기획위원회에서는 각 위원회의 설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, 운영 실적이 미흡한 위원회에 대하여는 개선 또는 폐지를 요구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 설치 및 통·폐합에 따른 규정 제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규정류의 관리규정에 따른다.

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 시 보직자는 전체 재직위원의 과반수를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한다.

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, 간사는 교직원 중에서 위촉한다.

⑤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기한을 정해 위원장을 대행한다.<신설 2024.00.00.>

제5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1년 또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신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② 보직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회의) ① 위원장은 필요 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각 위원회의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으며, 서면 심의의 회의 소집·개회·의결 요건은 출석하는 회의와 동일하게 적용된다.

1.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

2.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

3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이 어려운 경우

④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.

제7조(보고)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8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, 세부 사항은 각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9조(회의비 및 연구비) 각종 위원회의 위원(간사 포함)에게는 소정의 회의비와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 본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을 경우 기획처장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.

제10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6조 제3항에 한하여 이 규정 시행 이전부터 적용하여 운영한 것으로 본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교직원복지지원규정 일부개정(안)

1. 제안이유

가. 사망 및 퇴직 등의 사유로 재직 중 대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교직원에 대하여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규정에 의거한 위로금을 지급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사망 및 퇴직 등의 사유로 재직 중 대학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교직원에 대한 위로금 지급 규정 마련
- 관련조항 : 교직원복지지원규정 제4조

3. 주요토의과제

- 없음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규정 : 없음

나. 예산조치 : 위로금 지급액 및 지급기준, 지급 절차 등에 대한 주요 사항을 관계 부처와 협의 후 결정

다. 합의 : 기획처, 사무처

라. 기타 : 없음

※ 담당자(이메일주소) : 교학처 박민영(yousua0830@kookje.ac.kr)

붙임 1. 교직원복지지원규정 일부개정(안) 신·구조문대비표 1부.

2. 교직원복지지원규정 일부개정(안) 전문 1부. 끝.

교직원복지지원규정 일부개정(안)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적용대상)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본 대학에 근무하는 교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 또는 개인을 포함할 수 있다.</p> <p>제4조(세부지원내용) ① 교직원 및 가족 교육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3. <생 략> ② 근무활동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4. <생 략> ③ 경조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3. <생 략> <p>④ 위로금 지급</p> <p style="color: red;"><u><신 설></u></p> <p style="color: red;"><u><신 설></u></p> <p style="color: red;"><u><신 설></u></p> 	<p>제2조(적용대상)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본 대학의 교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 또는 개인을 포함할 수 있다.</p> <p>제4조(세부지원내용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위로금 지급은 각 호와 같다.</p> <p style="color: red;"><u>1. 사망 및 퇴직 등의 사유로 재직 중 대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 <p style="color: red;"><u>2. 위로금의 지급액 및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</u></p> <p style="color: red;"><u>3. 위로금은 퇴직과 동시에 일시금으로 본인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대학 경영상의 이유로 지급 대상자와 합의할 경우 분할 지급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</u></p>

교직원복지지원규정

제정 2013.05.01 전부개정 2016.01.11

개정 2024.00.00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국제대학교(이하 ‘본 대학’이라 한다) 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직원의 사기진작 및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대상)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본 대학의 교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 또는 개인을 포함할 수 있다.

제3조(복지의 종류) 복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직원 및 가족 교육지원
2. 근무활동 지원
3. 경조금 지급
4. 위로금 지급
5.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 사업

제4조(세부지원내용) ① 교직원 및 가족 교육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장학규정에 의거하여 교직원 본인 및 직계가족의 본 대학교 입학 시 등록금 지원
2. 보수규정에 의거하여 교직원 자녀 학비지원
3. 도서관 도서 신청 구입 지원

② 근무활동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명절선물 지급
2. 식비 일부지원
3. 근무복 지원 및 통학버스 무료이용
4. 도서관 및 체육진흥센터 무료이용

③ 경조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결혼 축의금
2. 사망 조의금
3. 화환 및 조화 등

④ 위로금 지급은 각 호와 같다.<개정 2024.00.00.>

1. 사망 및 퇴직 등의 사유로 재직 중 대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.<신설 2024.00.00.>
2. 위로금의 지급액 및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<신설 2024.00.00.>
3. 위로금은 퇴직과 동시에 일시금으로 본인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대학 경영상의 이유로 지급 대상자와 합의할 경우 분할 지급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<신설 2024.00.00.>

제5조(지원기준) ① 교직원 복지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지원내용별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6조(보칙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.